

2020-8호

08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 의정정보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0-8 호

08



## Contents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07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09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약체 구성 및 운용 조례
- 11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 14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17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19 전라남도 절수절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20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3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27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
- 29 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 31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34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30 인천시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 55명 위촉
- 40 울산시의회, 국무총리와 면담, 울산시 현안 사업 반영 요청
- 41 세종시의회, 제3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시민 공모로 결정한다
- 43 경기도의회, 언택트시대 비대면 원격교육 첫 시도

### 최근 제·개정 법령

- 47 주택법
- 49 국민체육진흥법
- 5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53 (참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에 따른 주요 변화내용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61 경기도 부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질의
- 65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관련 질의
- 68 경상북도 경주시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질의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8호

01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약체 구성 및 운용 조례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절수절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1.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시행 2020. 8. 12.] [부산광역시조례 제6228호, 2020. 8. 12.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의 대상)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2.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8. 20.] [대구광역시조례 제5464호, 2020. 8. 20.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 관계 공무원
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협의체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6.] [울산광역시조례 제2202호, 2020. 8. 6.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와의 연계 강화, 통일의 기반구축 및 울산광역시 미래 성장의 동력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방경제협력”이란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포함한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와의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말한다.
2.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국가를 말한다.
3. “국제회의”는 다수 국가의 대표들이 국제적인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여는 회의를 말한다.
4. “국제기구”는 국제적인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서 다수 국가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조직체(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북방경제협력 정책 추진)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북방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북방경제협력의 전략 및 기본방향
2. 북방경제협력 정책 세부사업의 기획, 발굴 및 추진
3.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의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관계 조성
4.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관한 울산광역시·공공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및 지원
5.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북방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북방경제협력 정책 추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방경제협력사업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에 속한 사람
3. 북방경제협력사업 관련 기업체·단체·기관에 속한 사람
4. 미래성장기반국장
5. 북방경제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6. 북방경제협력 관련 분야에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북방경제협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북방경제협력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국제회의 상설사무국의 유치 또는 설치) ① 시장은 북방경제협력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력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의 상설사무국(이하 “사무국” 이라 한다)을 유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국의 유치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4.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8. 7.] [경기도조례 제6720호, 2020. 8. 7.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환경·에너지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2조(법인격)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사업의 발굴·기획 및 지원
2. 환경오염 저감 기술의 개발·보급 및 상담
3. 지역 환경·에너지의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교류 협력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5. 에너지 효율의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6. 환경·에너지산업 육성 및 국내외 사업화 지원
7.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업사이클플라자 사업 상담 및 문화 확산
8. 지역 내 녹색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
9.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환경보전 의식의 증진을 위한 환경분야의 교육·홍보
10.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지역의 환경개선과 도민의 환경·에너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진흥원의 재원) 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경기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경기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등)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경기도 및 시·군이 수행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단, 운영결과 보고 등의 각종 인적 통계 및 조사 자료는 성별을 구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경기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근무)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5. 전라북도 가족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14.] [전라북도조례 제4811호, 2020. 8. 14.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가족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축산업의 발전과 전라북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살처분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를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가족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 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
  -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에 참여하거나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족 살처분등의 참여, 목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족 살처분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들의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축 살처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들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들에게 가축 살처분등의 참여 전·후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해 살처분 참여자들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부서와 관련 기관, 각 시·군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리지원단 지원) 도지사는 제9조의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6.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6.] [전라남도조례 제5130호, 2020. 8. 6.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7.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13.] [경상남도조례 제4827호, 2020. 8. 13.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우주비행체 및 관련부속기기류, 관련소재류의 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목표와 방향
2. 항공우주산업 분야별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교류 사업
2.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3. 항공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시회·박람회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담당국장이 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8.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23호, 2020. 8. 14.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도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회복과 도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제1급감염병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방역용품”이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5조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2호에 상응하여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방접종 지원, 방역용품 지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접종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 하되, 도내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방역용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을 도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용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지원한다.

1.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제6조(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7조(교육재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7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지급방법 등)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품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8호

02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

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1. 강진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13.] [강진군 조례 제2519호, 2020. 8. 13.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 성범죄 방지) ① 군수는 강진군내 학교(비인가 대안학교 등 포함)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강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군수는 강진군민의 디지털 성범죄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소식지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표어(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 2. 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18.] [금산군 조례 제2271호, 2020. 8. 18.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상담관의 위촉) 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담관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②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상담관의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의 금산군민의 공금 사항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4조(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근무) ① 위촉된 상담관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 지역 민원 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민원상담관 상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련 부서장이 한다.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촉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직무를 태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실비보상)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11.] [고양시 조례 제2280호, 2020. 8. 11.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 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나. 담보제공명령
  - 다. 일시금지급명령
  - 라. 이행명령
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양육중인 자녀가 성년이 된 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 때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 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 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제5조(지원기준 등) 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한시적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종료 등) ① 시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4.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6.] [시흥시 조례 제1946호, 2020. 8. 16. 제정]

### 주요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시흥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시흥시 보건소)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흥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8호

03



##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인천시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 55명 위촉

울산시의회, 국무총리와 면담, 울산시 현안 사업 반영 요청

세종시의회, 제3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시민 공모로 결정한다

경기도의회, 언택트시대 비대면 원격교육 첫 시도



##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시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 55명 위촉

- 시민불편사항,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의정활동에 상시적으로 반영 -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는 8월 13일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제5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55명을 위촉하였다.

의정모니터는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을 위해 2013년 제1기부터 올해 상반기 제4기까지 7년간 운영되었다. 금번 제5기 의정모니터는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여 경력사항, 성별, 지역별, 연령별 안배를 고려하여 구성하였고 2022년 6월까지 2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의정모니터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사항, 제도개선,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회에 제안·제보하고 시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년간 활동한 제4기 의정모니터의 경우 235건의 제안사항을 접수하여 80건이 개선되었고 24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날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을 위해 제5기 의정모니터 운영계획과 영상제작 등 소양교육을 전문 강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의정모니터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문제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며,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열린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울산광역시의회

# 울산시의회, 국무총리와 면담.. 울산시 현안 사업 반영 요청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는 6일에 서울시의회 방문에 이어 7일에는 서울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견학하고 총리공관을 방문했다.

울산시의원들은 서울시립미술관 시설과 작품,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내년 하반기 개관을 앞둔 울산시립미술관의 방향성 및 운영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구성, 다른 지역 미술관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에는 국무총리공관을 방문하여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나누고 만찬을 함께 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울산시의 현안 사업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병석 의장은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울주군 서생면 원전 대피로 도로건설사업, 북구 광역전철 송정역 연장사업 등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시의회, 제3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시민 공모로 결정한다

- 오는 13일까지 의정 슬로건 공모...최우수작 1명 우수작 2명 선정 -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오는 13일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제3대 후반기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다.

세종시의회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공모 참가 대상을 의원과 사무처 직원뿐 아니라 세종시민으로 확대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슬로건 작성 방향에 대해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회 목표와 방향성을 담아야 하고, 실천 가능한 의정 핵심가치를 쉽고 간결하게 15자 내외로 표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응모 방법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ejong.go.kr/>) ▲이메일([viva235@korea.kr](mailto:viva235@korea.kr)) ▲우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시의회 ▲팩스(044-300-7219)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응모 결과는 오는 8월말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수상자의 경우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최우수작 1명에게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30만원, 우수작 2명에게 여민전 각 10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제64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9월 9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과 목표가 후반기 슬로건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 후반기 슬로건을 의회 청사 출입문에 게시하고, 각종 홍보자료 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언택트시대 비대면 원격교육 첫 시도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Untact)문화 확산에 따라 지방 의원 의정역량 개발 교육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8월 18일,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의정활동전략’이란 주제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강사가 본인 연구실에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강의를 하고 도의원 등 수강생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휴대폰과 PC등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는 원격 교육방식(Webseminar)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지역주민, 단체 등과 소통이 많은 지방의원임을 감안하여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의정활동 전략”으로 하였으며,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원격 교육임에도 많은 의원들이 휴대폰, PC 등 온라인에 접속하여 교육에 참여하였다

강사로 참여한 디지털문화심리학자 건국대 경영학과 이승윤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흥미로운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사에 따르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디지털 정보는 이미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디지털 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의정활동전략을 실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의실을 벗어나 전국 어디에서나 휴대폰, 노트북 등으로 대학교수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코로나시대 언택트(Untact)문화 확산에 따라 지방의원의 교육 패러다임도 스마트하게 변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기도의회 관계자 역시 코로나시대 언택트(Untact)문화의 확산에 따라 의원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의정역량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8호

04



## 최근 제 · 개정 법령

주택법

국민체육진흥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참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에 따른 주요 변화내용



# 1. 주택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6호, 2020. 8. 18.,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함(제57조제2항제4호 신설).
- 나.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거주 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57조의2 및 제104조제10호 신설).
-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 의무자 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 의무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 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함(제57조의3 신설).
- 라.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전매 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고 이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4조제2항 및 제3항).

- 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4조제7항 신설).

##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0호, 2020. 8. 18.,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자·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 개정조항

- 가. 이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목적에 추가함(제1조).
- 나. 국가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계약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 다.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제12조제1항).
- 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되는 스포츠비리를 유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공무원 파견 요청권 등을 규정함(제18조의3).
- 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 바.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한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함(제18조의5 신설).

사. 신고자,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제18조의6 신설).

아.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7 신설).

자.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 또는 책임자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8 신설).

차.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제18조의13 신설).

카.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통합체육회 지부 등에 등록하도록 함(제18조의14 신설).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15 신설).

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발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18조의16 신설).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반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 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제6조의2 신설).

나.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제6조의3 신설).

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제6조의5 신설).

라.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대상에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을 명시함(제24조제1항).

## (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른 주요 변화내용

### □ 제·개정 개요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안을 '20. 7. 3. 국회에 제출
  - (제·개정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주민조례발안법」(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 <정부발의 법률 제·개정 절차>



### □ 주요 변화내용

#### <①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

-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
-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여,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
-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운영

〈 ②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

-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 의무를 부여
- 또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
-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 마련

〈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 수렴
-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
- 또한, 사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사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

<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

-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하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 제도화
-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

□ 기대 효과

- (주민참여) 주민들이 지방행정과정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 (자율성·능률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방행정 구현으로 행정 서비스 생산성 제고
- (책임성) 정보공개 확대 및 통제기능 강화로 주인-대리인 문제 완화, 자치·위임사무의 공백 없는 집행으로 주민 서비스 제공 책임성 향상

**붙임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현행	개정
주민자치 원리 강화	-단체자치 중심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명시
주민참여권 강화	-주민 권리 제한적 : ①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②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③ 참정권	-주민 권리 확대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시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
조례발안 청구요건 완화	-시·도·50만 이상 대도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100~1/70 -시·군·구는 1/50~1/20	-800만 이상 : 1/200 이하 -800만 미만 : 1/150 이하 -100만 이상 市 : 1/150 이하 -50~100만 : 1/100 이하 -10~50만 : 1/70 이하 -5~10만 : 1/50 이하 -5만 이하 : 1/20 이하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서명인수 상한: 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상한 하향조정: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은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분권법」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 시범실시	-「지방자치법」에 근거 마련하고 구성·운영 등 규정 구체화
기관구성 다양화	-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	-주민투표 거쳐 기관구성 선택권 보장(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②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	현행	개정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의무 등 미규정되어 국가 중심의 사무배분 발생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 원칙 규정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서울·경기 부단체장 : 행정2, 정무1 -그외 시·도 부단체장 : 행정1, 정무1	-시·도에 필요시 특정분야 전담 부단체장 1명(500만 이상 자치 단체는 2명) 설치 자율성 부여
특례시 명칭부여	-50만 이상 외 대도시 인정기준 근거 미규정	-100만 이상 및 일정기준 이상 5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
시도의회	-시·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시·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분야	현행	개정
인사권 독립	임용권은 시·도지사 권한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자문위원(전문인력) 운영(21명)	-모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 마련, 입법·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 ③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정보공개 확대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의회 의정활동이 분산적으로 공개되어 접근성 하락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국정통합성 근거규정	-국정통합성 미규정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 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시·군·구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시·군·구의 위법 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 (입법미비)	-국가가 보충적으로(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지방의원 검직금지 명확화	-검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하여 사퇴거부 사례 등 발생 -검직신고 내역이 외부 미공개	-검직금지 대상 개념을 구체화 하고, 검직신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여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 ④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법적근거 미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행정구역 결정 절차 개선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중분위 결정을 거쳐 불필요한 기간 소요	-분쟁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절차 간소화
경계 조정 절차 신설	-행정구역 조정 관련 지자체간 자율적 합의 어려울 경우 주민 불편 발생에도 장기간 미해결	-지자체간 자율적 조정 추진하고, 미해결시 중분위 통한 객관적 해결절차 마련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근거, 운영기준 등 미규정 (지침으로 운영)되어 혼란 발생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중앙 시도 행·재정적 지원근거 미규정	-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중앙, 시·도 지원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세부사항 미규정	-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 규정

**붙임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동시 제·개정 법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 동시 국회제출 예정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제정)**

- 주민조례발안 기능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후 별도법 제정
- 청구요건 완화(19세→18세, 필요 서명인수 축소), 단체장 경유하지 않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 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기구 제도화 추진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주요 중앙부처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3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

-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권자, 인사위원회,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 정비, 시·도 집행기관과 시·도의회 상호간의 인사 교류 사항 규정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

- 시·도의회 의장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 부여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 가능

**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국가-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주민자치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른 조문 삭제 등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8호

05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경기도 부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질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관련 질의  
경상북도 경주시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질의w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4항 등 관련)

[의견20-0152, 2020. 8. 4., 경기도 부천시]

**【질의요지】**

- 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 나. 조례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하면서 “위탁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규정할 수 있는지?
- 다. 조례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하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조례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정하면서 “위탁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 등 하위법규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제1항) 이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할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이용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재위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이용료 자체 뿐만 아니라 감면 대상 및 감면 기준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위탁 운영 중인 행정재산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정하고,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규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처럼 부천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이용료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인 이용료 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면서,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료 감경 대상으로 “위탁 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규정하는 것은 어떠한 행사를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나 집행기관이 아닌 위탁 받은 자가 스스로 이용료 감경을 통해 감경 기준을 정하고 이용료 결정에 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고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행정재산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로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용료 감면 요건은 실질적인 집행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고 이용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 공공시설의 목적,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감면 대상 간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어떠한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바, 사용료 감경의 대상은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제11조제2호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서 “기업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노동행사” 등의 행사를 사용료 감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사로서”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거나,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점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관련)

[의견20-0167, 2020. 8. 4., 인천광역시교육청]

###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관련)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 권한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1조 및 제127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제10조 및 제36조 등에 따라 시·도(각주: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함(「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의 교육·학예(각주: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를 말함(「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에게 부여된 예산안의 편성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게 되는바, 이는 의무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각주: 법제처 발간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09쪽 참조)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함)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평생교육법령에서 교육감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교육시

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각주: 법제처 2017. 4. 5. 의견제시 17-0076 및 2012. 5. 30. 의견제시 12-0152 참조)와 관련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이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인천교육청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직원 인건비, 의무교육과정의 학생 또는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급식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모두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보조금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률적으로 교육시설에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교육감의 예산편성 권한을 실질적으로 사전에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등에 따라 교육감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교육시설의 보조 등 지원 사무에 관한 교육감의 집행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구 「지방재정법」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에서 법률 상 설치·운영 의무가 없는 위반건축물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 [「지방재정법」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등 관련]

[의견20-0164, 2020. 8. 4., 경상북도 경주시]

### 【질의요지】

- 가.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행 전에 제정된 「주택법」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경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각주: 1995년 1월 3일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95호로 제정·시행됨. )에서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없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한 조례의 전체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나. 두 개의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하나의 특별회계 유효기간이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료한 후 유효기간이 종료한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해당 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지?

다.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한 특별회계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는 존속기한은 언제부터 기산하여 설정하여야 하는지?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목적에 따른 세입·세출의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특정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목적 사업 별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경주시조례”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하면서, 국민주택(각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함(경주시조례 제2조제1항 참조) )사업과 위반건축물 정비(각주: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같은 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같은 법 제113조(과태료),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경주시조례 제2조제2항 참조)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주택사업과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이라는 두 개의 사업 목적으로 하나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위법과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판결, 법제처 2020. 7. 7. 의견제시 20-0142 참조), 경주시조례는 국민주택사업에 관한 장(제2장)과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에 관한 장(제3장)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세출(제5조)과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의 세입·세출(제12조)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세입과 세출의 구체적인 내용도 각각 국민주택사업 및 위반건축물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주택사업비와 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비 간에 전용금지에 대해 규정(제13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수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또는 복수의 상위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할 수 있는 바(각주: 법제처 2019. 11. 11. 의견제시 19-0324 등 참조), 경주시조례에서는 비록 국민주택사업과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라는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개별 사업 별로 다른 법적 근거를 두고 사업비의 전용을 금지하여 각각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만약 경주시에서 현실적으로 하나의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개별 사업의 계정이 통합되어 있다면 회계분리를 위한 정산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면서(제3항)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같은 법 제33조제9항에 따

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에서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특별회계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므로, 존속기한이 지나기 전에 존속기한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존속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27. 의견제시 14-0213 및 법제처 2015. 4. 16. 의견제시 15-0090 참조 ) 경주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에 관한 부분은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으나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의 경우 법률상 특별회계로 설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 「지방재정법」 시행 이전에 위반건축물 정비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개정은 없었습니다.(각주: 구 「지방재정법」 시행 후 2018년 12월 30일 사이인 2015년 11월 30일 경주시조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위반건축물 정비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따라서 경주시조례 중 위반건축물 정비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 부분은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은 법령 전체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방식과 특정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고, 특정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 만료가 전체 법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 「지방재정법」제9조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제3항은 특별회계가 과도하게 설치될 경우 지방재정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으로(각주: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4. 4.)p.18 참조 ), 이러한 특

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두는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규제가 효력을 잃도록 하는데 있는 바 이는 특정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기준」p533 참조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주시조례는 국민주택사업과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주택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과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위반건축물 정비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위반건축물 정비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존속기한 만료로 경주시조례의 다른 조항이 모두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주시조례 중 법률 상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국민주택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주시조례는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이미 존속기한이 만료된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고, 구 「지방재정법」 시행 전에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조례에서 유효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인 2018년 12월 31일 전에 특별회계를 규정한 조례에서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정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신설함으로써 그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어 비록 규정의 형태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실효된 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하 “기존 조례”라 한다)에

서 단순히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미 실효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27. 의견제시 14-0213 및 법제처 2015. 4. 16. 의견제시 15-0090 참조 )

따라서 구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된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운영 하려면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신설하거나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조례에서 두 개의 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하나의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이 도달한 경우 기존 조례에서 그 외 특별회계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여 기존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에 존속기한이 만료된 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새로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혼란의 여지를 없앨 필요가 있으며(각주: 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 기존 조례에 실효된 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어 형태만 남아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다시 신설하는 경우 똑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어색하므로 해당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이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규정은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조문으로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기존 조례에 실효된 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하나의 조례에 두 개의 특별회계에 대해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두 특별회계가 각각 별도의 회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법령의 ‘시행’이라고 할 것인 바,(각주: 법제처,「법령 입안·심사의 세부기준」, p520 참조 ) 조례는 제정의 경우나 개정의 경우 동일하게 그 시행일에 조례에서 제·개정을 통하여 규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질의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존속기한이 만료된 특별회계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를 신설하거나 기존 조례에 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는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은 새로 제·개정된 조례의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회계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는 조례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표지 설명

### 충남도의회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 땅”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서부두 제방 3만 2834.8㎡를 당진 관할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주어졌고,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매립지 71%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켰다.

충남도과 당진·아산시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박해 대법원에 결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현재는 소관 밖이라며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 국회,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20. 7. 27. 보도자료-

**MEMO**

#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20년 8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